2022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(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) 공모 안내서 (민간경상보조)

2021. 10. 22.

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
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

목 차

Ⅰ. 사업개요 ····· 1

Ⅱ. 사업 세부내용 ····· 2

Ⅲ. 선정평가 절차 ····· 5

Ⅳ 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 ····· 7

Ⅴ. 사업 추진일정 ····· 8

Ⅵ. 행정사항 ····· 9

Ⅰ 사업 개요

□ 목적

○ **융합연구가 가능한 의사과학자를 양성**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기초의학, 자연과학, 공학 등 **타 학문의 교육 및 연구 지원**

- 임상 지식과 타 학문이 **융합된 의과학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**하여,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**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**

○ 융복합 연구결과를 활용해 **질병치료 및 신약·의료기기 개발**에 기여

□ 추진 전략

비 전 : **국가 바이오-메디컬 산업 혁신성장 촉진**

목 표 : **바이오-메디컬 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의사과학자(M.D.-Ph.D.) 양성**

세부 추진사업

① 전공의 연구 지원

전공의들에게 연구 방법 교육 및 연구 참여기회 제공으로 의사과학자로의 진출 지원

②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

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의사과학자 정착,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

③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

기초의과학 · 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을 지원하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

II 사업 세부내용

□ '22년도 신규 선정규모 및 국고보조금

사업명	전체 선정규모	국고보조금
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	37명 내외*	연간 50백만원 / 1인당

* 선정규모 대비 적합자가 미달인 경우에는 2차 공고(4월) 및 선정(8월) 예정
  - 1차 평가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2차 공고 시 연구계획 보완하여 참여 가능

□ 사업내용

○ **기초의과학·융합과학** 분야 **전일제 박사학위과정** 연구비 지원

□ 지원분야

○ 임상의학을 제외한 **기초의학*, 자연과학, 공학 분야 등의 박사 학위과정** 지원

* **기초의학 전공자는 석·박 통합 과정의 석사과정부터 지원 가능**

□ 지원대상

○ **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** 중 **전일제 박사**(또는 석·박사 통합) **학위과정 재학 중** 이거나 **입학 예정**인 자(전문의 여부 무관)

※ 지원 시작 기준 학위 과정이 박사과정 6학기, 석·박사 통합과정(박사과정에 준하는 경우) 8학기 이내 재학 중인 경우 신청 가능

※ 단, 기초의학 전공자는 석·박사 통합과정의 석사과정에 준하는 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하되, 이는 전문의 과정이 없는 기초의학교실 소속에 한함

- 최소 2년 이상 사업 참여 필수
- 자연과학대학·공과대학·과학기술원 등 융복합대학에서 지원 시 우대
-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'전공의 연구지원' 1년 이상 참여자는 선정평가의 최종 점수 산출 후 가산점 2점 부여

- 신청제한 : 전공의 수련과목과 동일한 전공과목 선택 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※ (예) 예방의학 전공자는 예방의학 박사 전공 선택 불가, 병리학 전공자는 병리학 박사과정 전공 선택 불가

□ 운영방식

○ 선발된 지원대상자가 **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을 사업운영기관**으로 지정하여 관리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구 분	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
지원규모	1인당 75백만원/년
국고보조금	1인당 50백만원/년
기관부담금	1인당 25백만원/년
지원기간	지원기간 (최대 4년) * 최소 2년 이상 참여 필수 ** 석·박사통합과정의 기초의과학 전공자는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최대 6년 이내 지원

※ 매년 지원기간·예산 등은 예산 변동이나 수행실적 평가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※ 국고보조금과 기관부담금은 반드시 2:1 매칭을 준수하여야 함

※ 연간 장학금 및 인건비 총액은 5천만원 이하로 예산 편성 가능(국고보조금 및 기관부담금 포함)

□ 특기사항

○ 매년 지원기간·예산 등은 수행실적 평가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* 2022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등은 조정될 수 있음

○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직접비 재원으로 기관부담금 매칭 불가

- 동 사업과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

□ 성과지표

○ **(성과지표)** 관련 연구 분야의 **SCI(E)급 논문(주저자)** 또는 **특허** 출원 1편 이상

- 특허 등록 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해 인정
- 단독 특허인 경우 1편으로 인정, 공동특허는 1/n편*으로 인정

* 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, 계산 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
Ⅲ 선정평가 절차

□ 평가개요

○ 평가목적

-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제출한 대상 선정

○ 평가절차

- 구두평가 실시 : 연구계획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
구분	평가 내용	수행 주체
신청·접수	○ 연구계획서 등 서류 제출 ※ 제출된 서류 검토 시, 구비서류 미비 및 자격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취소될 수 있음	한국보건산업진흥원
⬇		
평가실시	○ 연구계획 구두평가	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평가위원회
⬇		
최종 선정	○ 선정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※ 연구계획, 추진일정 및 예산 등 최종수정	한국보건산업진흥원
⬇		
계약체결 및 사업실시	○ 한국보건산업진흥원 - 대학* 협약체결 * 선정된 학생이 소속된 대학	한국보건산업진흥원, 지원자 소속대학

※ 향후 전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

※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

□ 평가원칙

○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(이하 '관리지침'),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평가결과 종합방식에 의거하여 구두평가*를 실시함

*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후 점수의 산술평균 및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최종 점수 산출

- 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

* 동점자가 있는 경우,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포함하여 결정

- 필요 시,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고 순위 결정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 (배점)	평가 내용
연구계획 (40)	▶ **연구내용의 적합성(15)** · 연구 주제 및 목표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목표와 부합한 내용인가?
	▶ **연구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(10)** · 연구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?
	▶ **연구내용의 창의성(10)** · 연구 방법, 연구 내용에 연구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어 있는가?
	▶ **추진일정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(5)** · 연구목표(최종, 당해)는 적절한가? · 연구 추진전략 및 연차별 세부추진 체계는 적절한가?
수행역량 (40)	▶ **지원대상자의 역량(30)** · 지원대상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(임상 및 기초의학 지식, 연구수행 경험 등) 및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? · 지원대상자는 연구내용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? · 지원대상자는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가?
	▶ **지도교수의 역량 및 지원의지(10)** ·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위한 관련 실적 및 경험(관련분야 연구성과, 인재양성 등)은 우수한가? · 지도교수의 모니터링 및 멘토링 계획과 의지는 충분한가?
기대성과 (20)	▶ **연구성과의 기대가능성(10)** · 사업종료 후 바이오메디컬 우수성과 도출과 후속연구 연계가 기대되는가?
	▶ **융복합 전문가로의 성장가능성(10)** · 융복합 의과학분야 연구자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?

Ⅳ 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

□ 제출서류

○ 연구계획서(날인된 원본 1부 및 한글파일)

※ 선정평가 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

□ 제출기한 및 방법

○ 제출기한 : **2022년 1월 7일(금), 15:00 까지**(신청마감 시간 엄수)

※ **마감일 1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완료 처리됨**

○ 제출방법 : 연구계획서 원본은 우편(등기) 또는 직접제출(방문), 연구계획서 한글 파일은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

○ 제출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산업인력육성팀

□ 관련 문의

○ 사업담당자 : 황선영 연구원, 043-713-8423, mediscientist@khidi.or.kr

□ 기타사항

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

○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

Ⅴ 사업 추진일정

○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제출('21.10월~'22.1월)

○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 선정평가**(1월말~2월초, 일자 별도 안내)**

○ 선정평가 결과 공고 및 협약(2월)

○ 선정자 및 소속대학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최(3월)

- 사업 수행 시 필요사항, 예산 집행 기준 및 지원금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

○ 연구결과 보고회 및 중간연차평가(11월~'23.1월)

○ 연도별 회계정산보고서 제출(12월~'23.2월)

*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사전에 별도 공지 예정

Ⅵ 행정사항

□ 수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

○ **(수정계획서)**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

○ **(연구계획 변경)**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

○ **(사업결과보고서)** 지원대상자는 결과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

※ 본 사업은 융합형 의사과학자양성 운영지침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수행하며,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근거함

□ 예산편성 및 집행

○ **(사업비 교부)*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분할교부 방식으로 교부(2회 이상)

○ **(사업비 정산)*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위탁정산기관(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기관)에 의뢰하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, 정산보고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, 집행 잔액 및 발생한 이자, 불인정 금액은 e-나라도움을 사용하여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직접 반납

※ 정산 수수료는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편성함

○ **(사업비 집행)** 사업비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

※ 변경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승인받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비고란에 이를 기록함

붙임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사업 성과지표 안내

□ 사업종료 시점의 지원사업 참여자별 성과지표

○ (성과지표) 관련 연구 분야의 SCI(E)급 논문(주저자) 또는 특허 출원 1편 이상

- 특허 등록 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해 인정
- 단독 특허인 경우 1편으로 인정, 공동특허는 1/n편*으로 인정

* 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, 계산 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
○ (논문 세부기준) 사사 병기 가능

- "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사업" 문구를 포함한 사사 명시 필요

[논문 사사 표기내용]

국문 표기 "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."

영문 표기 "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MD-Phd/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(KHIDI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."

○ (특허 세부기준) 특허출원확인서, 등록증, 특허공보 등 증빙 제출

- 특허 출원 후 기술 이전 등 라이센싱은 연구자 소유로 별도 제약사항은 없음
- 평가위원회에서 특허 성과와 연구계획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사업 성과로 인정 여부 결정

*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,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

○ 성과지표는 지원사업 종료 시점 최종평가의 평가대상이며, 지표 달성 여부 등 세부 평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함

- 성과지표 미달성,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학위 미취득 시 국고보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환수될 수 있으며,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동 사업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